

예비형식승인표 (제6조의4제1항 관련)

제 작 회 사 : 기 기 형 식 :

예비형식승인번호 : 예비형식승인일 :

기기고유번호 : 수입신고일 :

※ 본 환경측정기기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입니다.

비고

1.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, 크기는 가로 90mm×세로 40mm로 한다. 다만, 소음계의 예비형식승인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.
2.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(刻印)으로 한다.